



## 12월 28일(목) 11:00 (브리핑 시작) 이후 사용

비고	# 공동배포 : 공정거래위원회 # 공정위 브리핑 : 12. 28(목) 11:00, 정부세종청사 2동, 시장구조개선과장	
담당	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	과장 정용욱, 서기관 김정아, 사무관 박현수 (044-200-2396, 2397, 2452)
	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	과장 이동원, 서기관 신용희, 사무관 이유진 (044-200-4353, 4354, 4358)

## 2017년 하반기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 확정 발표

- ▶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신규 진입제한, 사업활동 제약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**경쟁제한 규제혁파** 추진
- ▶ 공정위 주관 과제 발굴 및 소관부처 협의 → 국조실 주관 **이견과제 조정회의** → **하반기 18건 개선 확정**  
\* 상반기 개선 확정 과제 7건 기 발표(공정거래위원회, '17.7.26)
- ▶ 중·소규모 맥주 제조·유통 규제 완화, 돋보기안경 통신판매 허용 등 소비자 편익 증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성과
- ▶ 앞으로도 국민 편익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**경쟁제한 규제혁파** 지속 추진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8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, 「'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 방안」을 논의·확정했습니다.

### 1. 추진배경 및 경과

□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먹거리·생필품·레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혁파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조정회의를 거쳐 총 25건의 경쟁 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.

- 상반기에는 금년도 추진할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,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총 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(공정거래위원회, '17.7.26)
- 하반기에는 관계 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핵심 과제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주관 규제조정회의 등을 통해 총 1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.

## 2. 주요 과제별 개선내용 및 효과

- ① (맥주) 진입·사업활동제한 규제로 인하여 대기업 위주의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되어 제품의 다양성 감소, 소비자 불만 증가 등 규제개선이 절실한 분야로, 그 중 중소·소규모 맥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.
- ① (중소 맥주 유통) 그간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 맥주사업자 (일반)가 소매점 등으로의 유통 시 종합주류도매업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(주세법 시행령 제9조 별표 5),
- 앞으로 중소 맥주사업자의 제품유통 확대 및 유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('18년 8월).
  - 이를 통해 중소 맥주사업자의 수제맥주 판로 확대가 가능해지고,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### ※ 참고: 제조면허별 유통 규제

- 맥주 제조면허는 일반과 소규모로 구분
  - 일반 사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이용은 가능하나 특정주류도매업자 이용은 불가, 소규모 사업자는 종합·특정 주류도매업자 모두 이용 가능
- \* 주류도매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, 특정주류도매업자로 구분
  - 종합주류도매업자: 면허(TO)제로 운영, 일반탁주 이외 모든 주류 취급 ('15년 말 기준 1,149개사)
  - 특정주류도매업자: 신고제로 운영, 탁주·약주·청주·전통주·소규모맥주만 취급 ('15년 말 기준 1,685개사)

② (소규모 맥주 제조) 현행 주세법령상 소규모 맥주사업자는 제조 시설(담금 및 저장조) 기준이 5kl 이상 75kl 미만으로 제한되어 연간 생산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(주세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).

- 내년부터 사업자의 생산량을 제약하는 제조시설 기준을 75kl → 120kl로 상향('18년 2월)할 계획이며,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품 품질과 영업력 등에 따른 성장\*기반을 마련하여 맥주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
\* 상향시 연간 생산량 기준으로는 900kl → 1,440kl로 확대되는 효과

※ 참고: 제조면허별 시설 규제

- 소규모 사업자는 제조시설 기준이 5kl 이상 75kl 미만으로 제한되나, 일반 사업자는 최소 시설(전발효조 25kl 이상, 후발효조 50kl 이상)만 갖추면 제조 가능하며, 면허 수는 제조시설 단위로 부여

\* '15년 말 기준 맥주 제조면허 총 79개 ⇒ 일반은 대기업 7개(사업자 기준 3개사), 중소기업 7개(사업자 기준 3개사)이고, 소규모는 65개(사업자 기준 60개사)임

※ (해외사례) 독일, 미국, 영국 등 주요국은 제조시설 규모를 직접 규제하지 않고 제조시설 신고만으로 충분하며, 일본은 시설기준 없이 최소 연간 60kl만 생산하면 맥주 제조·판매 가능

② (민물장어)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경우 인공부화가 되지 않아 주로 중국·대만·동남아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, 그 수입시기가 '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'로 제한됐으나,

- 이를 전면 폐지하여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수입이 연중 허용 됩니다('17년 11월 기 개선).

- 치어 구매원가 절감, 연중 이식에 따른 양식 개체 수 증가 등을 통해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민물장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③ (전자제품)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수입 시 전파법상 적합성 인증을 받았더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 별도의 인증의무를 요구함에 따라(전파법 제58조의2), 영세한 국내 수입업자의 병행수입 제품 판매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




- ※ 방송통신기자재로서 적합성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기기  
(전기가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디지털 제품을 모두 포함)
- 무선설비기기(휴대전화기, 레이다, 무선LAN, 무전기 등)
  - 유선기기(전화기, 팩스, 신용카드결제기, 유선방송 증폭기)
  - 정보기기(컴퓨터, 프린터, 모니터, 디지털카메라, MP3) 등

- 과도한 인증의무 완화를 위하여 先인증자의 인증을 後인증자의 인증으로 갈음하는 방안 등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('18년 6월).
-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자재 소비자들의 구매비용 절감 및 국내 병행수입업체의 경쟁력 향상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.
- \* 60,000여 국내 병행수입자가 인증비용(기준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 원 추정)을 절감하게 되어, 소비자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기대(인터넷기업협회)

④ (생활용품) 현행 법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·수입·판매·중개 업체 등에 대해 안전인증, 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부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(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등).

\* 소비자 위해정도에 따라 안전인증, 안전확인,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분류

**<안전인증 제도 현황(생활용품)>**

구분	마크	품목(생활용품)	주요 의무
안전인증		물놀이기구 등 11종	제품시험, KC표시의무 등
안전확인		일회용기저귀 등 30종	제품시험, KC표시의무 등
공급자적합성 확인		의류 등 39종	제품시험, KC표시의무 등

- 이와 같은 안전인증 의무 등에 소요되는 과도한 비용 및 기간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,

- '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'에 대해 '공급자적합성확인'에서 새로 신설되는 '안전기준준수\*' 대상으로 **완화할 예정**입니다(개정안 국회 계류중).

\* 소비자 위해 우려는 적으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'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'을 신설하여, 현행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생활용품 중 일정 제품에 대하여 사전 시험 검사 및 KC 표시 의무 완화 (모델명, 제조업자명, 제조일자 등만 표시)

○ 인증의무 완화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\*이 경감되고 관련 생활용품에 대한 소비자 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됩니다.

\* 예) 소상공인의 경우 티셔츠 1장의 생산원가 3,000원 중 검사료가 약 1,000원 (국회 전안법 공청회, '17.2.16)

⑤ (돋보기안경)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(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),

○ 그 중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(저도수)인 경우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('18년 8월).

- 돋보기안경 시장에 온·오프라인 경쟁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품 가격하락 및 다양한 제품 선택 등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입니다.

※ (해외사례) 미국 등 대부분 국가는 이러한 규제사례가 없으며, 인터넷 및 편의점에서도 판매

⑥ (초경량비행장치)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(공역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가 공고, '17.12월 기준 29개 지정).

\* (기존)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 29개 → (개선) 김제, 고령 추가, 31개로 확대



- 이에 따라 기존 인접지역에 공역이 없어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편익 증대에 따른 **항공레저산업의 활성화**가 기대됩니다.

**⑦ (국가발주공사)** 현행 심사기준은 300억 원 이상 대형 국가공사의 입찰기준 내 배치기술자 항목을 두고, 기술자의 근무기간이 **6개월 미만이면 20% 감점**(최소 1.6점~ 최대 3점 감점)하고 있습니다(종합심사 낙찰제 세부심사기준 별표 2).

- 이와 같이 중소·중견업체의 참여기회를 제약하고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배치기술자 재직요건 중,
  - 대형공사(850억 원 이상)는 현행 규제를 유지하되, 중소기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준 대형공사\*의 경우 **재직기간 요건을 완화(6개월→3개월)** 하기로 했습니다('18년 6월).

\* 조달청 발주 3·4·5등급 공사(300억원~850억원 공사, 고난이도 공사 제외)

- 개정기준이 적용될 경우 다수의 기술자를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**중소·중견 건설사의 국가공사 입찰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촉진할** 것으로 기대됩니다.

\* 대형 공사가 아닌 공사규모 300~850억 원 입찰 시장에서 중견기업에게 유리하게 규제를 재조정함으로써 **'규제 차등화 효과'** 제고

**⑧ (조달 봉제품)** 조달물품 심사기준은 '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기준 (제조계약 관련)'을 두고, 이를 관련 **자격증 보유자 수로만 평가**하고 있습니다(물품적격심사기준 별표1).

\* '기술인력 보유정도' 평가에 있어 대상업체가 보유한 자격증 소유자수에 따라 최대 6점(100점 만점)을 배점하고, 총점 95점 미만인 경우 낙찰 불가

- 이에 따라 **봉제업 등 일부 제조업**의 경우 숙련된 생산인력은 있어도 관련 기술자격증 보유자가 적어 해당 기술인력 고용 자체가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.

\* 관련 기술자격증(섬유, 의류) 소지자들도 주로 대형 방직·방적업체, 섬유 제조업체나 일부 대형봉제업체에 주로 재직

-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봉제업 등 기술 자격증 보유자가 많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보유정도의 **배점 기준을 하향 조정할 계획**입니다('18년 6월).

\* '18년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배점기준 마련 예정

- 피복 등 **군수물품 조달** 시장에 **숙련공**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, 자격증 보유자 수가 부족한 **중소업체의 입찰참가 기회**가 **확대**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**9 (예선) 현행 법령상 12년 초과된 예선의 경우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금지되어 있으나(선박의 입항 및 출항등에 관한 법률 제24조),**

- 앞으로는 **12년 초과된 예선\***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('18년 8월).

\*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주로 선박 입·출항을 보조

- 12년 초과된 예선의 활용(구매·판매)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자별 예선교체 비용이 절감되고 **항만 간 예선 공급 불균형**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.

**10 그 외 기타 과제(8건)는 붙임 자료 참조**

- 국세청장의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(기재부), LPG연료 사용가능 차량 확대(산업부), 여행업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 완화(문체부)
- 분리발주 적용사유 구체화(기재부, 행안부), 대규모-소규모 집단에너지 사업자 간 LNG 공급가격 차별 개선(산업부),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방제선 위탁배치 독점 개선(해수부)
-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의 영업구역 제한 완화(환경부), 상호저축은행 지점 설치요건 완화(금융위)

※ 붙임 : '17년 경쟁제한 규제혁파 추진방안